

의안번호	2213514
의 퇴 인	이용우의원
회 답 일	2025.10.22.
추 계 번호	25B55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u>출산전후휴가</u>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함	의무규정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제1항)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u>출산전후휴가</u>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제여부	비고(주제 미실시 사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2. 상세 사유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²⁾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
 - 종전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간은 10일이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4년 10월 22일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제도가 변경되었음
 - 2024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³⁾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이 401,910원이고, 1인당 평균 배우자 출산휴가의 수급액이 401,000원 이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수급자에게 지급 상한액에 근접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A)	18,720	18,270	16,168	15,797	18,241
총 수급액(B)	7,050	6,904	6,146	6,240	7,311
1인당 수급액(B/A)	0.377	0.378	0.380	0.395	0.401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이 전제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513호)」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하면서 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연계 법률안 및 동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

1)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4호

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배우자의 임신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사람 중 유산·사산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에 이르지 못한 자의 규모와 이들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및 수급액을 추정해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용자 수와 사용 행태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